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안전정책 및 활동 사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Index

- 01 일반현황
- 02 안전정책
- 03 안전활동 체계
- 04 안전활동 사례
- 05 주요 성과 평가
- 06 성공요인 분석
- 07 향후 발전계획



**01**

#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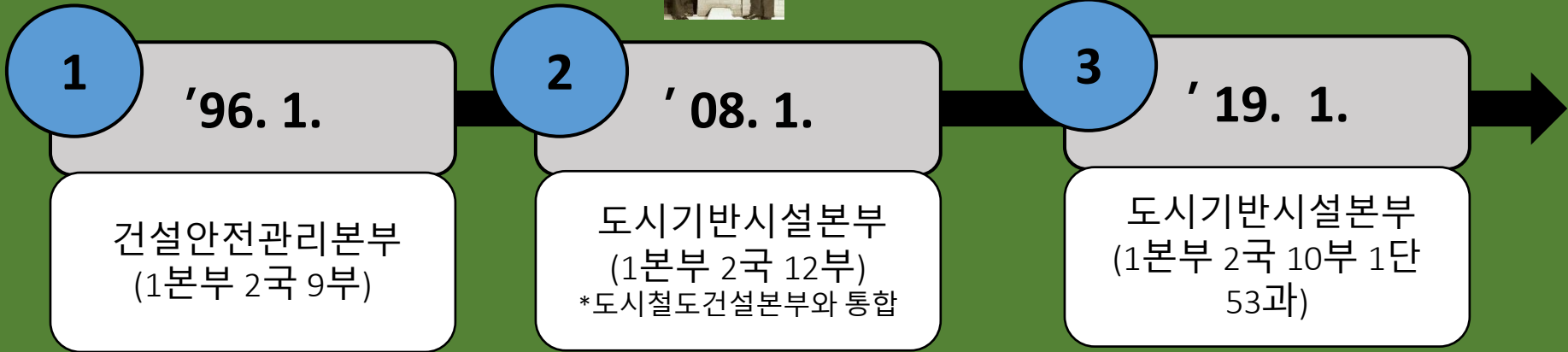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01. 일반현황



##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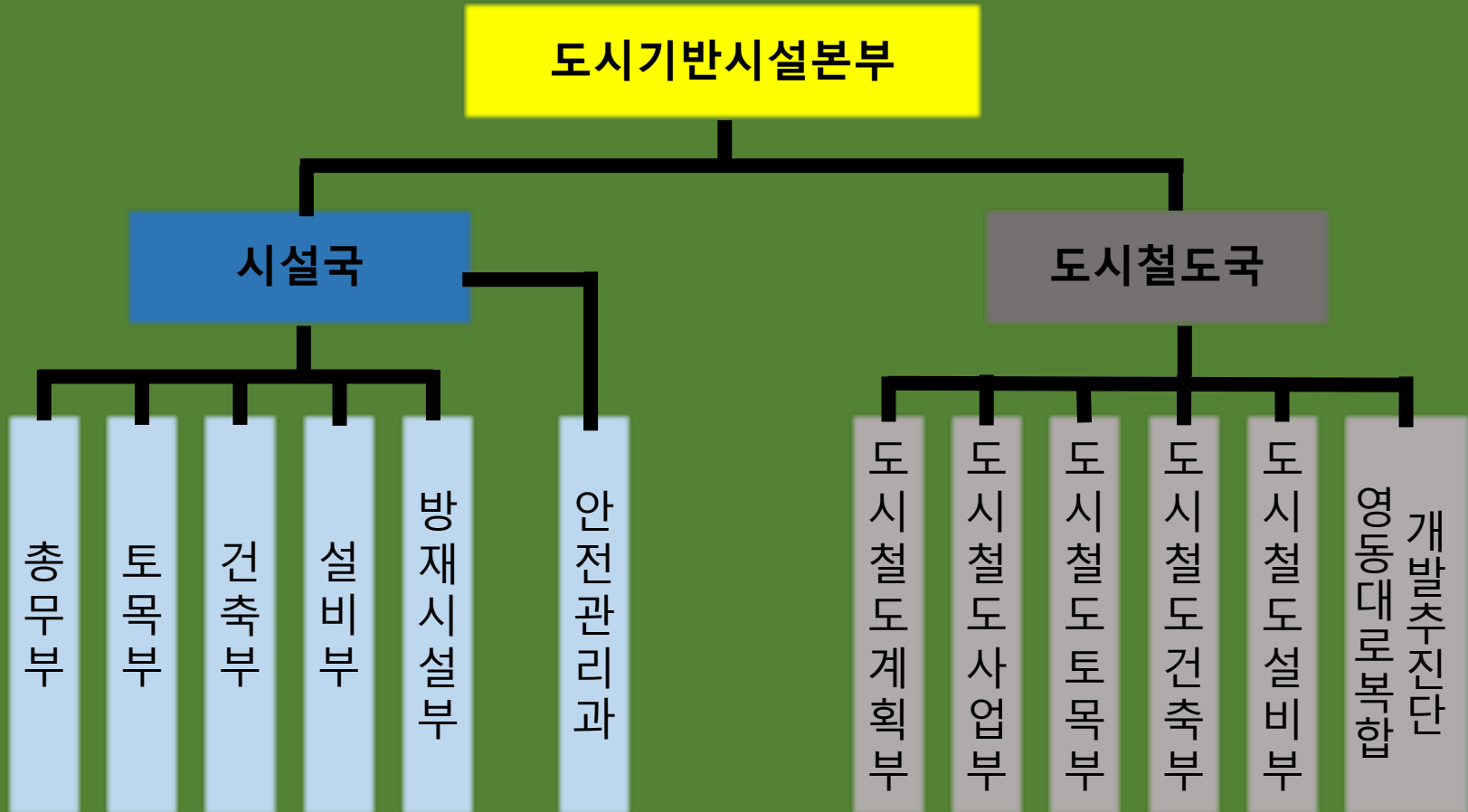


## 주요업무

- ◎ 도시철도 건설: 서부선, 우이신설 연장, 신림선, 동북선, 별내선 등
- ◎ 도로 및 도로시설물 건설: 지하차도, 교량, 터널 등
- ◎ 방재환경 시설물 건설: 물재생센터, 빗물펌프장, 공원 등
- ◎ 공공 건축물 건설: 문화 복지, 경제시설 등

# 01. 일반현황

## ■ 조직 및 인력현황



# 1.1 설계안전성 검토(시행령 75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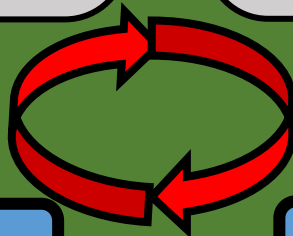
## ■ 참여자별 업무

### 발주자

- 설계 안전성 검토과정의 관련자료 제공
-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검토 및 승인 업무 이행여부 총괄관리

### 설계자

- 설계과정 중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 도출(설계서, 과업지시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
-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 마련



### 건설사업기술관리기술인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 설계안전성검토 내용 반영 확인 및 이행 확인
- 준공시 해당 내용 발주처에 제출되는 서류 검토

### 시공자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 설계안전성검토 내용 반영 및 이행
- 준공시 해당 내용 발주처에 제출



# 1.1 설계안전성 검토(시행령 75조의2)

## ■ 작성 예시

No	공종명	위험요소 (Hazard)	위험성					위험요소 저감대책	저감 대책 적용 후 위험 등급	위험요소 관리주체	잔여 위험 요소				
			물적 피해 (사고결과) 사고유발원인	인적 피해	발생 빈도	심각 성	위험 등급				위험요소 저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도면 No
A-01	가설공사	시스템비계_공사장_설치	무너짐_ 구조검토 미실시	떨어짐	4	4	16	구조검토서에 의한 시스템비계 설치	4	설계자	시스템비계 작업 시 안전작업 프로세스 준수	Yes	시공사	반영	저감대책/ 잔여위험 A-01
A-02	가설공사	시스템동바리_고소_타설작업	무너짐_ 구조검토 미실시	떨어짐	4	4	16	구조검토서에 의한 시스템동바리 설치	4	설계자	시스템 동바리 작업 시 안전작업 프로세스 준수	Yes	시공사	반영	저감대책/ 잔여위험 A-02
A-03	가설공사	PIT_상부슬래브_타설	무너짐_ 지지불량	떨어짐	4	4	16	시스템 동바리 구조검토 실시작업 및 이동로 지반다짐 고려	4	설계자	동바리 작업 시 안전작업 프로세스 준수	Yes	시공사	반영	잔여위험 저감대책 A-03
A-04	마감공사	달비계_고소_도장작업	없음_ 추락방지 미조치	떨어짐	4	4	16	육단 골조에 달비계 작업용 안전대 부착설비 2개소 이상 설치	4	설계자	안전대 부착설비와 철근의 결속상태 확인필적	Yes	시공사	반영	저감대책/ 잔여위험 A-04

## ■ 벌칙조항

### ◆ 건설기술진흥법 제 91조(과태료)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자(제62조 18항)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62조18항)



# 1.2 안전관리조직

## ■ 참여자별 조직구성

시공사

안전총괄책임자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 ■ 법으로 정한 직무의 범위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8.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 1.2 안전관리조직

## ■ 참여자별 조직구성

### 시공사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토목,건축,전기,기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 지휘한다

#### ■ 법으로 정한 직무의 범위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 1.2 안전관리조직

## ■ 참여자별 조직구성

### 시공사

#### 안전관리담당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 한다

#### ■ 법으로 정한 직무의 범위

-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 3.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 협의체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 ■ 법으로 정한 회의 내용

- 1.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 2.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



# 1.2 안전관리조직

## ■ 참여자별 조직구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2014.5.2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법으로 정한 직무의 범위

1.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관리자 배치, 보건관리자 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
2.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4.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2 안전관리조직

### ■ 참여자별 조직구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2014.5.2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법으로 정한 직무의 범위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 1.2 안전관리조직

## ■ 참여자별 조직구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2014.5.2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법으로 정한 직무의 범위

#### 6.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 1.2 안전관리조직

## ■ 참여자별 조직구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2014.5.2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법으로 정한 직무의 범위

- 7.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 4. 각종 사고보고
  -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 8.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해야된다**



# 1.2 안전관리조직

## ■ 참여자별 조직구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2014.5.2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법으로 정한 직무의 범위

9. 시공회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1.2 안전관리조직

## ■ 참여자별 조직구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2014.5.2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0.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담당자(감리)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

### ■ 수시로 입회해야되는 작업종류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 1.2 안전관리조직

### ■ 벌칙조항

#### ◆ 건설기술진흥법 제 88 조(벌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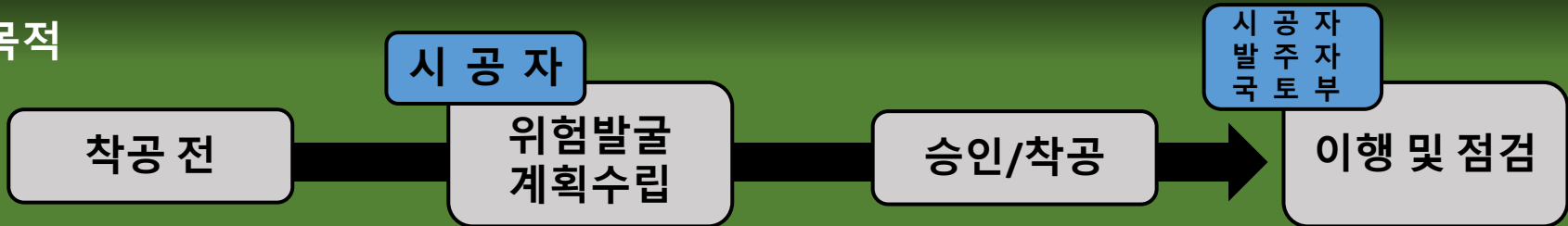
#####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이하의 징역

- ☞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제출/이행(조직 구성)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법제62조제1항)



# 1.3 안전관리계획

## ■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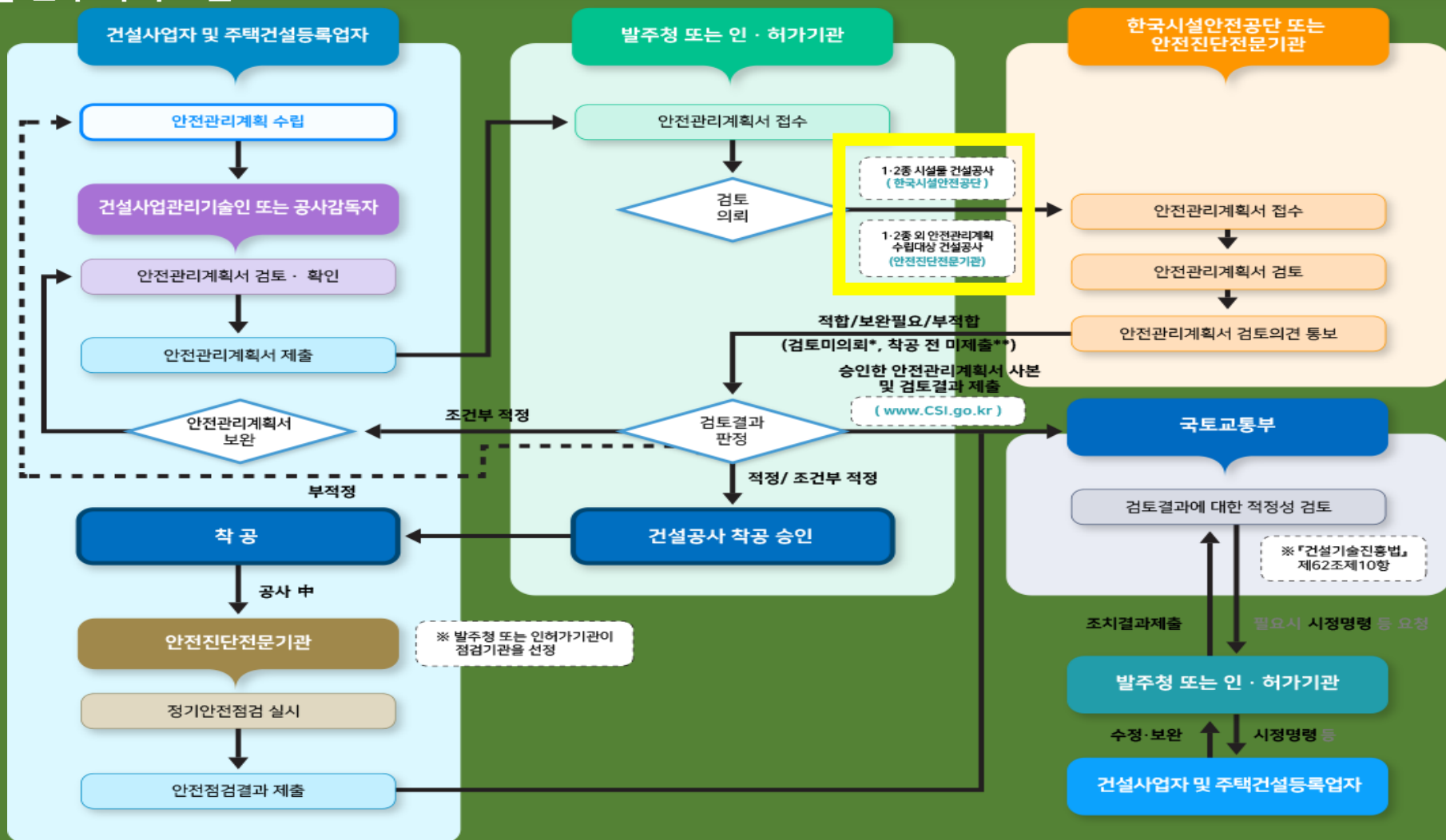
## ■ 대상공사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6.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
7.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건설관리법 제3조)  
[천공기(10m 이상), 향타기 및 향발기, 타워크레인]
8.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건진법 시행령 제01조의2제1항)  
[높이31M이상비계, 브라켓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5M이상, 갱폼, 터널지보공, 높이 2M 이상 흠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구조물(FCM, ILM), 높이 10M이상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9.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1.3 안전관리계획

## ■ 업무처리흐름도





# 1.3 안전관리계획

##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방법 (www.CSI.go.kr)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통합포털 | 설계안전성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수준평가 | 아차사고 | 건설사고 | 위험요소프로파일 | 현장점검 | 알려드립니다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 접수 대장

접수 대장

제출일자: yyyy-mm-dd ~ yyyy-mm-dd | 제출번호: SA - 2020 - 00001

공사업: [선택] | 입력: [입력] | 검색하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처리현황 입니다.

No	공사명	제출기관	검토기관	현장주소	제출일자	제출번호	진행상태
1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020-05-27		검토결과 제출완료
2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020-02-17		검토결과 제출완료

( 1 / 1 페이지 ) / 총 2개

## ■ 벌칙조항

### ◆ 건설기술진흥법 제 88,89조(벌칙)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이하의 징역
  - ↳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제출/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법제62조제1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이하의 징역
  - ↳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없이 착공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법제62조제1항)



# 1.3.1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 ■ 대상공사 (20년 12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 1.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에 해당되며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창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

## ■ 계획서 내용

- 건설공사의 개요 (위치도, 공정표, 설계도서, 공사개요)
- 비계 설치계획 (건축물 외부비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추락/낙하물방지망, 안전난간대 등의 설치계획과 안전시설물 예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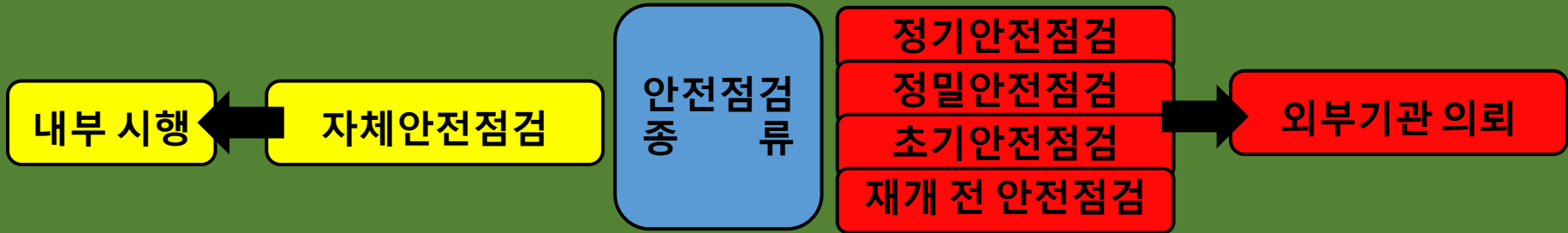
## ■ 검토 및 승인자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결과 통보 원칙)



# 1.4 안전점검

## ■ 목적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재해를 예방

## ■ 종류별 점검방법

### 자체안전점검

- 점검 총괄자: 안전총괄책임자
- 점검 지휘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점검 수행자: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
- 점검 방법:

1. **공중의 시공상태** 및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 점검
2.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실시**
3.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을 다음날 **확인** 한다(별지제3호서식)



# 1.4 안전점검

## ■ 종류별 점검방법

### 자체안전점검

#### ■ 별지 제3호 서식 (지적사항 조치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자체·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공 사 명	
현 장 소 재 지	
점 검 일 시	
점검기관(책임자)	
대 상 공 종	
점 검 항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일 시	
조 치 자	(인)
조 치 사 항	
발주자(건설사업관리자)확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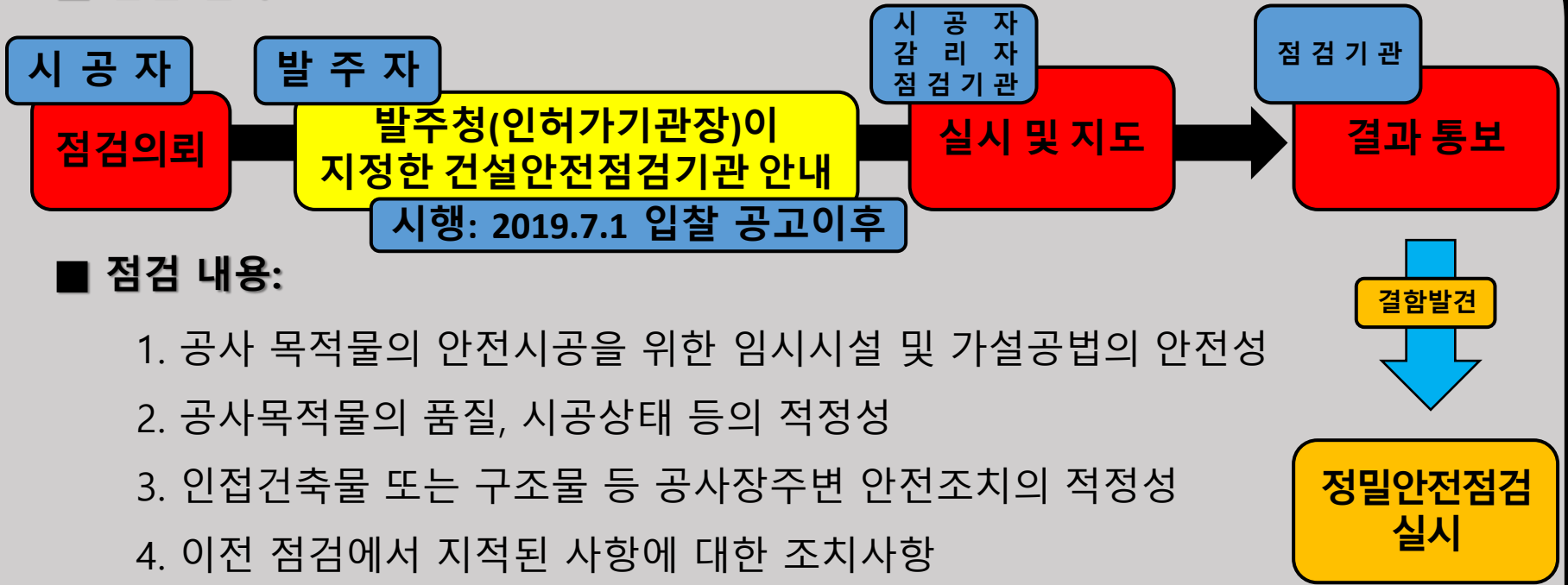


# 1.4 안전점검

## ■ 종류별 점검방법

### 정기안전점검

#### ■ 점검 절차



#### ■ 점검 내용: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 1.4 안전점검

## ■ 점검시기

건설공사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단단계 시공시	-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허구덕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수도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기안정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 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시공시	-
	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 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지하차도지하상가복합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도로 철도 항만 또는 건축물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1.4 안전점검

## ■ 벌칙조항

### ◆ 건설기술진흥법 제 88 조(벌칙)

####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이하의 징역

- ☞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제출/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법제62조제1항)
- ☞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법제62조제1항)



# 1.5 안전교육

## ■ 목적

1. 시공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 확보
2. 작업자의 안전 확보

## ■ 교육 시행자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담당자

## ■ 교육시기

**매일 공사 착수 전에 교육 실시**

## ■ 기록관리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서류 제출

## ■ 교육내용

1.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2.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 기술상의 주의사항 등

## ■ 벌칙조항

### ◆ 건설기술진흥법 제 88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법제62조제1항)



# 1.6 안전관리비

## ■ 목적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계상 및 사용

## ■ 계상시기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다**
- 건설업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발주자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한다

## ■ 정산

-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 객관적인 서류 근거를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 후 정산 한다

## ■ 증액조건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1.6 안전관리비

## ■ 사용기준

항 목	내역
<p>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p>	<p>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li> <li>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li> <li>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li> <li>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li> </ul> <p>※ 기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p> <p>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li> <li>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li> <li>-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li> </ul> </li> </ul> <p>※ 기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p>



# 1.6 안전관리비

## ■ 사용기준

항 목	내역
<p>2. 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p>	<p>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p> <p>나.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p> <p>※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p>



# 1.6 안전관리비

## ■ 사용기준

항 목	내역
<p>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p>	<p>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매달기 공사 비용</li> <li>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li> <li>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li> <li>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li> </ol> <p>※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p> <p>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li> <li>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li> <li>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li> <li>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li> </ol> <p>※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p> <p>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li> <li>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li> <li>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li> </ol> <p>※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p> <p>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p>



# 1.6 안전관리비

## ■ 사용기준

항 목	내역
<p>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p>	<p>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PE드럼, PE웬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li> <li>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li> <li>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li> <li>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li> <li>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li> <li>6)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li> <li>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li> </ol> <p>※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p> <p>나.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p>
<p>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p>	<p>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p> <p>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p> <p>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p>





# 1.6 안전관리비

## ■ 벌칙조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 91 조(과태료)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법제63조제1항**)

☞ 안전관리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법제63조제2항**)



# 1.7 가설구조물 안전성확인

## ■ 목적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안전성 확인대상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브라켓(bracket) 비계**
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4.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5.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6. 높이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7.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8.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 관계전문가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가 적합함을 인정하는 기술사



# 1.7 가설구조물 안전성확인

## ■ 안전성확인 제출 서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공상세도면
-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구조계산서

## ■ 벌칙조항

### ◆ 건설기술진흥법 제 88조(벌칙)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법제62조제11항**)



# 1.8 사고조사

## ■ 신고대상

###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건설사고

1. 건설사고
  -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2. 중대한 건설사고
  - 1) 사망자가 3명이상 발생한 경우
  - 2)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한 경우
  -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顛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 신고 시간

건설사고 인지 후 **2시간 이내**

## ■ 신고 내용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2. 사고발생 경위
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4. 공사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 1.8 사고조사

## ■ 신고 방법

종합정보망([www.csi.go.kr](http://www.csi.go.kr))의 사고시스템으로 신고 한다

### ■ 신고내용

공사명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 Kiscor 등록 공사명 일치 필요/미등록시 수기 입력
사고발생일시	2019-07-30	16:49	
사고발생장소	<input type="text"/>		
피해상황	사망자수(명)	내국인 :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외국인 :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부상자수(명)	내국인 :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외국인 :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사고신고사유	<input type="checkbox"/> 사망 1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input type="checkbox"/>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신고 사유 선택
사고발생경위	<input type="text"/>		

### ■ 수신자

구분	소속	성명
발주청 <input type="button" value="Q"/>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공공공사 : 발주청  
 - 민간공사 : 인허가기관 선택

- 소속기관의 담당자 선택  
 - 담당자 직접 입력 가능

### ■ 신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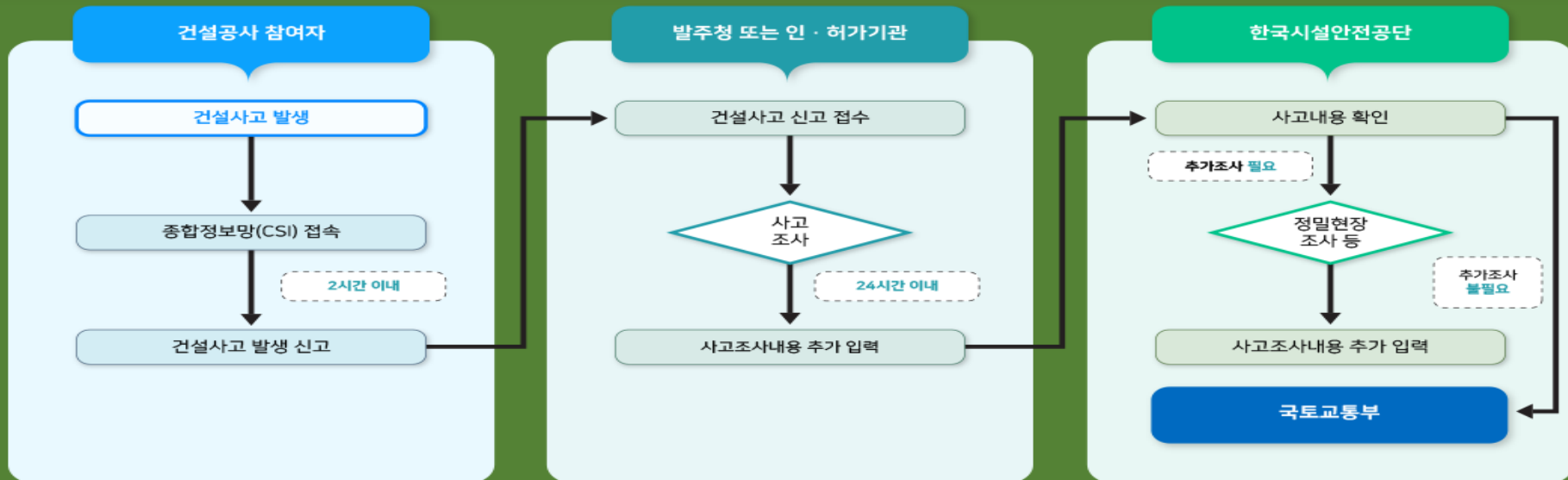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사공사 <input type="button" value="Q"/>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 소속기관으로 가입 후 신고가능  
 - 비회원 신고시에도 소속기관은 최초 등록이력이 있어야함



# 1.8 사고조사

## ■ 사고조사 흐름도



## ■ 벌칙조항

### ◆ 건설기술진흥법 제 85,86,91조(벌칙 및 과태료)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착공~하자기간 중 다리, 터널 등에서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업무과실로 착공~하자기간 중 다리, 터널 등에서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법제67조제1항)



# 1.9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 ■ 목적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제도

## ■ 평가대상

2016.05.19 이후 계약된 총공사비 200억 이상의 건설공사 참여대상자  
(총공사비란? 전기, 소방, 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 ■ 평가시기

발주청: 년1회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현장: 공기 50%이상 진행 시 1회 (공기는 키스콘 등록 기준임)
- 본사: 년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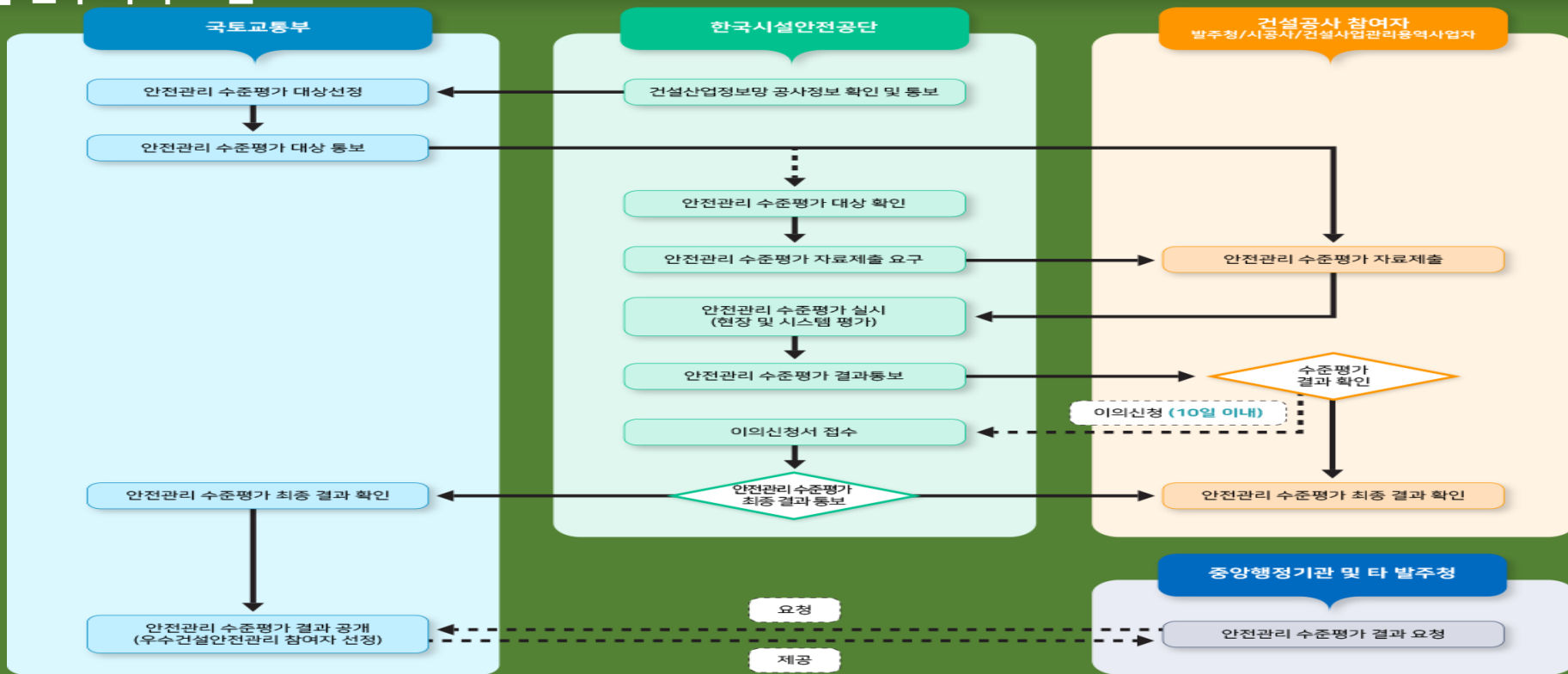
## ■ 평가방법

종합정보망 ([www.CSI.go.kr](http://www.CSI.go.kr))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 제출



# 1.9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 ■ 업무처리 흐름도



## ■ 벌칙조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 91조(과태료)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62조제14항)**





# 1.10 부실벌점제도

## ■ 목적

-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있음

## ■ 벌점측정 및 부과주체

- ① 국토교통부장관
- ② 발주청(민간투자사업인 경우 주무관청)
- ③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

## ■ 부과 측정대상 및 대상자

**측정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1억5천만원 이상), 공사감리

**대상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설기술자), 건축사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 **분담이행방식:**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 1.10 부실벌점제도

## ■ 목적

-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있음

## ■ 벌점측정 및 부과주체

- ① 국토교통부장관
- ② 발주청(민간투자사업인 경우 주무관청)
- ③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

## ■ 부과 측정대상 및 대상자

**측정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1억5천만원 이상), 공사감리

**대상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설기술자), 건축사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 **분담이행방식:**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 1.10 부실벌점제도

## ■ 벌점에 따른 불이익 규정

### 입찰참가제한 기간

누계평균벌점	제한내용
20점 이상~35점 미만	2월
35점 이상~50점 미만	4월
50점 이상~75점 미만	6월
75점 이상~100점 미만	8월
100점 이상~150점 미만	1년
150점 이상	2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기준 등)

### 입찰참가제한 감 점

누계평균벌점	제한내용
1점 이상~2점 미만	0.2점
2점 이상~5점 미만	0.5점
5점 이상~10점 미만	1점
10점 이상~15점 미만	2점
15점 이상~20점 미만	3점
20점 이상	5점

「건설기술진흥법」시행  
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  
리기준)



# 1.10 부실벌점제도

## ■ 벌점에 따른 불이익 규정

### 누계 평균벌점별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누계평균벌점	입주자모집 시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10이상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5이상~10미만	전체동의 골조공사 완료된 때	
3이상~5미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1이상~3미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4] 입주자모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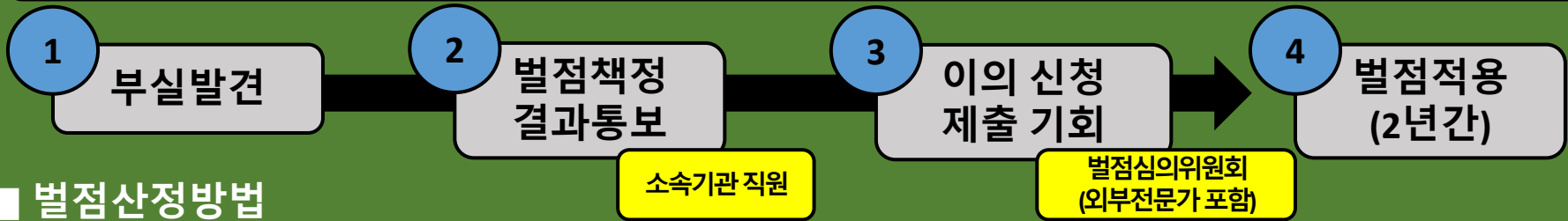
시공능력평가금액 산정시 실적액 3%범위내 감액



# 1.10 부실벌점제도

## ■ 벌점처리절차

발주기관이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인지한 후 해당 반기내에 벌점 부과 원칙



## ■ 벌점산정방법

2021.1.1부터 시행

### 평균벌점

**누계평균은  
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업체평균벌점	$\frac{\text{현장벌점합계}}{\text{점검현장수 합계}}$
기술자 평균벌점	현장벌점 합계

- 반기에 부과된 현장벌점을 업체별로 합산
- 동일 반기에 점검 받은 점검현장수의 합으로 나누어 업체 평균벌점 산정
- 공동이행방식공사의 경우 점검현장수는 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
- 점검결과 벌점이 없는 경우에도 점검현장수에 포함

누계 평균벌점	$\frac{\text{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2}$
---------	-----------------------------------



# 1.10 부실벌점제도

## ■ 경감제도

업계가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벌점을 경감해주는 제도 도입

### 경감제도

<별표8 제5호바목>

-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수	1반기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20%	36%	49%	59%

- 10회 이상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반기 벌점 경감

관리우수 비율	80% ~ 90% 미만	90% ~ 95% 미만	95% ~
경감점수	0.2점	0.5점	1점



# 1.10 부실벌점제도

## ■ 측정기준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주요부실내용	벌점
<b>○토공사의 부실</b> 가) 기초굴착과 절토성토 등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3 2 1
<b>○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b> 가) 주요구조부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 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다) 재료분리가 0.1m <sup>2</sup> 이상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보수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2 1
<b>○배수상태의 불량</b> 가)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1 0.5
<b>○시공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b> 가) 주요구조물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나) 그 밖에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3 2 1



# 1.10 부실벌점제도

## ■ 측정기준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주요부실내용	벌점
<b>○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b>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b>○가설구조물 설치상태의 불량</b>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포함)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3 2
<b>○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b> 가) 105조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3 3 2





# 1.10 부실벌점제도

## ■ 측정기준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주요부실내용	벌점
<b>○건설용 자재 및 기계 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b>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 기구 또는 주요 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나) 건설 기계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을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한 경우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2 1
<b>○설계도서와 다른 시공</b>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b>○계측관리의 불량</b>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나) 설계도서의 규정상(계약 협의사항 포함)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2 1 0.5



# 1.10 부실벌점제도

## ■ 측정기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요부실내용	벌점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라) 그 밖에 확인검측을 누락한 경우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0.5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 1.10 부실벌점제도

## ■ 측정기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요 부실내용	벌점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 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3  2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가) 건설 기계·기구의 반입·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가 사용된 경우 나)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다)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3  2  1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1



# 1.10 부실벌점제도

## ■ 벌점 조회

건설시공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설기술 용역업		
업무영역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해당반기	부과기관/벌점부과번호/현장벌점		반기별 평균벌점	누계 평균벌점	
건설(시공)업		2018-하	한국도로공사	1.18	2	0.08	0.29
		2019-상	한국철도시설공단	1.14	0.6	0.06	
			한국철도시설공단	1.14	1.4		
		2019-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11	3	0.09	
			한국철도시설공단	1.14	1.26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1.8	0.5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18	1		
		2020-상	인천국제공항공사	1.15	0.42	0.34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18	1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2	1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2	1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2	1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12	2				

## ■ 벌칙조항

### ◆ 건설기술진흥법 제 89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실 측정 또는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법제53조제1항, 제54조1항)**



# 1.11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

## ■ 목적

건설공사 일요일 시행 제한

## ■ 시행 제한의 예외

아래와 같은 현황의 공사중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1.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보수 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 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 환경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공법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6. 도서 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우선 시행 후 사후 승인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1.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 1.2 안전보건관리체제
-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4 노사협의체
- 1.5 안전보건관리규정
- 1.6 안전보건교육
-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8 위험성평가
- 1.9 산업재해 예방 지도



# 1.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 ■ 목적

-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 건설공사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적용범위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이며,
- 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 계약건 부터 적용

## ■ 업무 수행 자격

- 발주자 소속 임직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3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5년 이상
- 안전보건조정자 (제7조 설계안전보건대장만 해당)



## ■ 작성방법

- 두 개 이상으로 분리 발주시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한다
- 단, 분리발주라도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때에는 통합작성 가능



# 1.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

- **작성주체: 발주자**
- **작성시기: 건설공사 계획단계**
- **자료제출: 설계 계약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 **작성내용**
  - 1) 사업개요
  - 2) 현장 제반 정보
    - 3)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 공사금액 적정성
      - 공사기간의 적정성
      -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 4) 작성 및 확인자 서명부

기본안전보건대장

## 1. 사업개요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 2. 현장 제반 정보

공사규모 (공사종류, 연면적 등)	
위 치 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인접 건축물 현황	
기타 특이사항	





# 1.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작성주체: **설계자**
- 작성시기: **기본설계 단계**
- 자료제출: **발주자에게 제출,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제공**
- 작성내용
  - 1) 사업개요
  -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 3)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위험성평가 내용
    - 위험성평가 기준
    -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 4) 작성 및 확인자 서명부

### 설계안전보건대장

#### 1. 사업개요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대상 작성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공학 길이(M)	최고높이 (M)	면적 /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 1) 공사금액 산출서

--

##### 2) 공사기간 산출서

--



# 1.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 **작성주체: 수급인**
- **작성시기: 공사 착공 전**
- **작성방법: 발주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받고 반영 내용 변경시 발주자에게 변경요청 승인 득**
- **계획이행: 발주자는 3개월 마다 1회 이상 확인점검 수급인이 미이행시 작업중단 요청**
- **작성내용**
  - 1) 사업개요
  -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조치 이행 계획
  -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 조치내용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내역
  - 5)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및 결과 조치 내용
  - 6) 작성 및 확인자 서명부

별지 제8호 서식

###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담당자
	주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담당자(원마치)
	현장소장					
안전사업 관리기술 (간리)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주요 공법						



# 1.2 안전보건관리체제

## ■ 조직구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 법으로 정한 직무의 범위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지휘감독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조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1.2 안전보건관리체제

## ■ 조직구성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조건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다

### ■ 법으로 정한 직무의 범위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조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1.2 안전보건관리체제

## ■ 조직구성

### 관리감독자

선임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장 생산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 법으로 정한 직무의 범위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와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1.2 안전보건관리체제

## ■ 조직구성

###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법으로 정한 직무의 범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2 안전보건관리체제

## ■ 조직구성

### 안전관리자

####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선임인원	자격
50억~800억 미만 (토목150억 이상)	1명 이상	산업안전기사 이상 등
800억~1,500억	2명 이상 (전후 공정 15% 1명)	산업안전기사 이상 등
1500억~2,200억	3명 이상 (전후 공정 15% 2명)	지도사, 기사7년, 산업기사 10년 이상 경력자 1명 필수 선임
2,200억~3,000억	4명 이상 (전후 공정 15% 2명)	지도사, 기사7년, 산업기사 10년 이상 경력자 1명 필수 선임
?	?	?
1조 이상	11명 이상 (전후 공정 1/2명)	지도사 등이상 경력자 3명 필수 선임



# 1.2 안전보건관리체제

## ■ 조직구성

### 보건관리자

선임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법으로 정한 직무의 범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법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2 안전보건관리체제

## ■ 조직구성

### 보건관리자

#### ■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선임인원	자격
800억	1명 이상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등
토목1,000억 이상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1,400억(토목1,000억), 상시근로자 600명 증가 할 때 마다 선임인원 1명씩 추가

※ 의사, 간호사의 자격으로 선임시 시행령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됨



# 1.2 안전보건관리체제

## ■ 조직구성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 선임대상 현장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2개 이상의 건설공사여야 함:분리발주)

### ■ 법으로 정한 직무의 범위

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 · 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5. 안전보건조정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선임 자격 조건

감리자, 공사감독자,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목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

## ■ 설치대상

건설업: 120억 이상 (토목공사 150억 이상)

## ■ 구성방법

### 근로자위원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사업장 근로자

### 사용자위원

1. 사업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 산업보건의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 ■ 운영방법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 1.4 노사협의체

## ■ 목적

안전보건 관련 노사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

## ■ 설치대상

건설업: 120억 이상 (토목공사 150억 이상)

## ■ 구성방법

### 근로자위원

1. 도급 및 하도급을 포함한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 명예감독관
3. 20억 이상인 도급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 사용자위원

1. 사업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 20억 이상인 도급 및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근로자, 사용자 위원간의 합의를 통해 20억 미만인 도급 및 하도급의 근로자, 사용자대표를 위원 위촉가능

## ■ 운영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준용하여 운영

정기회의 : 2개월마다

임시회의 : 노사협의체의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운영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1.5 안전보건관리규정

## ■ 목적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 대상현장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 ■ 작성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단,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함

## ■ 안전관리규정 포함 내용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1.6 안전보건교육

## ■ 목적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 ■ 교육 시행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등

## ■ 교육종류와 내용

### 근로자 정기교육

■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1.6 안전보건교육

## ■ 교육종류와 내용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 교육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 ■ 교육내용 :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1.6 안전보건교육

## ■ 교육종류와 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교육시간** : 신규 6시간 이상 / 보수교육 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신규 / 보수교육 내용 상이함)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 **교육시간** : 신규 34시간 이상 /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신규 / 보수교육 내용 상이함)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6 안전보건교육

## ■ 교육종류와 내용

### 보건관리자

■ **교육시간** : 신규 34시간 이상 /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신규 / 보수교육 내용 상이함)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 · 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 · 분진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 · 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6 안전보건교육

## ■ 교육종류와 내용

### 채용 시 교육

■ **교육시간**: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그 외 2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 **교육내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1.6 안전보건교육

## ■ 교육종류와 내용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교육시간 : 일용직 1시간 이상, 그외 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1.6 안전보건교육

## ■ 교육종류와 내용

### 특별교육

- 교육시간 :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신호수)      2시간 이상(단기간, 간헐적 작업)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6 안전보건교육

## ■ 교육종류와 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 ■ 교육시간 : 지정된 시간과 주기 없음

#### ■ 교육시기 :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 교육내용 :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1.6 안전보건교육

## ■ 교육종류와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교육시간 : 2시간 이상(최초 노무제공시)    16시간 이상(특별교육)  
2시간 이상(특별교육이며 단기간, 간헐적 작업인 경우)

### ■ 교육내용 :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1.6 안전보건교육

## ■ 교육종류와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특수형태 근로자:

건설기계 (27종)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건설기계 종류

- |         |             |             |            |
|---------|-------------|-------------|------------|
| ① 불도저   | ⑧ 모터그레이더    | ⑮ 콘크리트펌프    | ㉒ 천공기      |
| ② 굴삭기   | ⑨ 롤러        | ⑯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㉓ 향타 및 향발기 |
| ③ 로더    | ⑩ 노상안정기     | ⑰ 아스팔트피니셔   | ㉔ 자갈채취기    |
| ④ 지게차   | ⑪ 콘크리트벙칭플랜트 | ⑱ 아스팔트살포기   | ㉕ 준설선      |
| ⑤ 스크레이퍼 | ⑫ 콘크리트피니셔   | ⑲ 골재살포기     | ㉖ 특수건설기계   |
| ⑥ 덤프트럭  | ⑬ 콘크리트 살포기  | ㉚ 쇄석기       | ㉗ 타워크레인    |
| ⑦ 기중기   | ⑭ 콘크리트믹서트럭  | ㉛ 공기압축기     |            |



#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목적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 ■ 설치대상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사용불가항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다.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2. 안전시설비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나.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다.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가.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 자세한 내용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참고



# 1.8 위험성평가

## ■ 목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 ■ 대상현장

모든 건설공사현장,

## ■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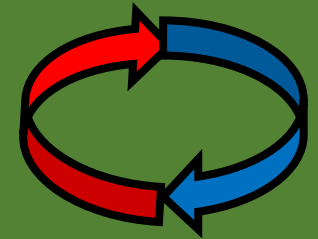


## ■ 종류 및 시기

- 최초평가: 착공일 1년 이내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1년 마다
- 수시평가: 하청업체 선정 후 작업 전에 실시

NO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가능 수준이 될때까지 반복



# 1.9 산업재해 예방 지도

## ■ 목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 ■ 대상현장

1. 공사금액1억이상 120억미만의 공사
2.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 ■ 예방 지도 횟수

$$\text{기술지도 횟수} = \frac{\text{공사기간(일)}}{15\text{일}}$$

## ■ 제외 현장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공사
3. 안전관리자가 선임 된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 지도 내용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감사합니다